

□ 사무국장(변호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5.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01.법률	01.법무	NCS 미개발 직무(세분류)로 별도 분석을 통해 내용 도출
<b>한국부동산원 주요사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가격공시</li> <li>○ 부동산 조사·통계</li> <li>○ 부동산 및 감정평가 시장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관리 및 보상수탁사업</li> <li>○ 도시재생사업 및 녹색건축</li> <li>○ 부동산 R&amp;D 및 정책지원</li> </ul>
<b>능력단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검토, 법률상담, 사건처리, 민원상담 등</li> </ul>		
<b>직무수행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업무 총괄</li> <li>○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 및 조사관 지휘·감독</li> <li>○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쟁점정리 및 법률적 검토, 법률상담, 조정신청의 접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민원 안내,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등</li> </ul>		
<b>전형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결정</li> </ul>		
<b>일반요건</b>	연령, 성별	무관	
<b>교육요건</b>	학력, 전공	무관	
<b>필요지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헌법·행정법·상법·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임대차분쟁조정에 필요한 법률 지식, 판례 및 법이론, 소송 관련 기본지식, 부동산 관련 기본지식 등</li> </ul>		
<b>필요기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정보검색 및 활용능력, 법령 해석 및 사례 적용 능력, 법적 쟁점 파악 및 법률적 사고를 통한 해결방안 도출 능력 등</li> </ul>		
<b>직무수행태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 상황을 법적으로 분석하는 자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자세, 문제 상황에 따른 법적인 후속조치를 분석하는 자세 등</li> </ul>		
<b>필요자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기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공고일 현재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li> </ul>		
<b>직업기초능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li> </ul>		
<b>참고사이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ww.ncs.go.kr</li> </ul>		

## □ 인사규정 제17조(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합격이 적발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 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1.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8.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10.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 나.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11. 기본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가목 외의 비영리법인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가. 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나. 식품 등 국민안전에 관련된 인증·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② 제1항 단서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 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제1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외의 공무원

3. 2급 이상의 공무원

4.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5.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④ 제1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 3. 29.>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 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이하 “협회”라 한다)

**별첨3****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내용** **면접전형**

장애유형 및 정도		편의제공 내용
지체장애	상지	전담도우미 지원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PT면접 진행 시 발표 준비시간 1.5배 연장
	하지	전담도우미 지원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 층 배치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뇌병변장애		전담도우미 지원 관련서식 확대 제공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 층 배치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PT면접 진행 시 발표 준비시간 1.5배 연장
시각장애		전담도우미 지원 관련서식 확대 제공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PT면접 진행 시 발표 준비시간 1.5배 연장
청각장애		보조공학기기(인공와우 등) 착용 허용 관련자료 등 서면 제공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발표 준비시간 1.5배 연장은 종합병원 의사진단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제공여부를 결정하므로 진단서 원본 제출 필요(종합병원 이상)

**별첨4**

**증명서 출력 방법**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정부24(www.gov.kr)

정부24
서비스
정책정보
기관정보
고객센터

**2021** 이렇게 달라집니다

3/5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 1,606
신청서비스 1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인증서(공통,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신청서비스 1건
1
발급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정부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자격득실조회**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신청인**

성명 \* 홍길동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901010 - .....

**조회내용**

신청일 2021년 02월 09일

**수령방법**

수령방법 선택  프린터 출력  전자문서지갑 전송

\* 민원신청후 나의민원 민원신청 내역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신청내역**

온라인 신청민원
제3차제출 및 기관제출(상선)
제3차제출 및 기관제출(수선)
장구접수민원

※ 3일 이전의 신청내용은 검색기간을 입력한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 처리 알림 메일이 수신되지 않을 경우, 스램메일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간별 검색 2021년 2월 6일부터 - 2021년 2월 9일까지

민원접수번호 (신청일)	민원사무명	부수	처리상태	교부기관	연락처	주가입장
20210209-11395478 (2021년 2월 9일)	건강보험자격득실조회	1	처리 완료 발급문서 등록완료	보건복지가족부		
			문서출력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버튼 클릭

② 팝업창에서  
[회원 신청하기] 또는  
[비회원 신청하기]  
버튼 클릭하여 로그인 또는  
비회원 신청 정보입력

화면 하단  
[신청하기] 클릭

[문서출력] 클릭 후  
증명서 발급한 뒤  
PDF파일로 스캔

**참고**

**한국부동산원 본사 및 지사 안내**



구 분	소재지	구 분	소재지
본 사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청주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새터로 34
서울강남지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3	충주지사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31
서울중부지사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7	광주지사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4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432	순천지사	전라남도 순천시 이수로 296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종로 61	전주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수원지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64	군산지사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35
성남지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81번길 16	제주지사	제주도 제주시 연삼로 473
안양지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번길 55	대구지사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41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안동지사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568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58	포항지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201
경기서부지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	부산동부지사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14
춘천지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부산서부지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181번길 10
강릉지사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087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대전지사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창원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상산구 상남로 25
천안지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38	진주지사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884
홍성지사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청사로 158		